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2021. 10. 14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-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육미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약칭의 사용(안 제5조)

- 도 →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

○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5조, 제8조)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→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아닌 → 않은
- 범위내에서 → 범위에서
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가산금을합산하여”를 “가산금을 합산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아이사랑 보너스카드」”를 ““아이사랑보너스카드”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행정제 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차요금 징수)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<u>아니한</u> 사람 : 그 주차요금의 1배의 <u>가산금을합산하여</u> 부과</p>	<p>제4조(주차요금 징수)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<u>않은</u> 사람 : 그 주차요금의 1배의 <u>가산금을 합산하여</u> 부과</p>
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관용차량(도, 시·군·사업소 등의 차량을 말한다)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p>	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관용차량(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, 시·군·사업소 등의 차량을 말한다)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80퍼센트 감면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는 충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<u>범위 내에서</u> 요금 면제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「<u>아이사랑보너스카드</u>」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민</p>	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80퍼센트 감면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는 충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<u>범위에서</u> 요금 면제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“<u>아이사랑보너스카드</u>”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 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「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.</p> 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.</p> 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